

● 전국도서관대회 제1주제 발표

새圖書館法에 따른 公共圖書館의 제문제

조 원 호

〈국립중앙도서관열람과장〉

1. 새 도서관법의 골격

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국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	
전반적인 영세성으로부터 탈피	국가 정보자원의 총력화
각종·각급 도서관의 진흥	전국 도서관의 조직화
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의 변화 및 그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여러 규정	문헌정보 유통의 체계화 및 처리기법의 표준화와 경영의 합리화 등을 꾀하려는 여러 규정
(1)목적 (2)정의 (3)도서관의 종류 (6)도서관의 시설·자료 (7)사서직원등 (8)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 (9)도서관발전위원회 (10)~(11)도서관진흥기금 (12)조세감면 (15)~(18)국립중앙도서관 (20)공공도서관-업무 (22)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(23)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	(1)(2)(9)(16)-①- 2 및 4(16)-② (17)자료의 제공 및 납본 (18)국제표준자료번호 (33)-4(38)-②(41)~(45)도서관 정보협력망

운영위원회 (33)대학도서관-업무 (36)학교도서관-업무 (38)~(40)전문 및 특수도서관 (46)~별칙

2. 공공도서관 관련 주요 사항

- 통합법 형태
- “국립중앙도서관”규정 별도
- 정의·업무: 정보봉사 기능 강화, 레크레이션 기능 약화
- 설립자 확대: 단체·개인
- 공립공공도서관의 설치·육성: 강행 규정화
-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재원: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명시
- 국고보조금 범위: 자료구입·운영비까지 확대
- 관장: 관련규정 입법화
- 도서관 운영위원회: 설치규정 명문화
-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도·감독등: 현실화
- 사용료 개념의 정리: 사용료·입관료
- “도서관정보협력망”상의 역할: 지역대표관
- 각종기준의 개정

3. 주요 현안들과 새 법의 태도

현 안	문 제 의 식	새법의 내용
○입법목적의 구체성	· 행정력의 실질적·효율적 수행 · 구체적인 법적 적용	제1조
○정부조직 내의 도서관 정책 전담부서	· 도서관 발전의 기본조건 · 법의 실효성 보장 및 미비점 보완	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7조 제5항
○정책자문기구	· 전문적 조언 · 실질적 기능 발휘	제9조 ※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
○사용료	· 개념의 정리-세분화 · 국립공공도서관의 "입관료" 폐지	제30조
○도서관 협력체제	· 도서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상호협력의 극대화 · 실현 가능한 구체적 법적	제41조~제45조
○운영재원	· 부담 주체의 명시-목적세 논의 · 국고보조의 강화 · 예산 영세성의 탈피	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시행령 제13조
○인력 구조 개선 및 확충	· 전문성 제고-관장 전문직 구성비 강화 · 정원 확충	제23조 제1항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와 부칙 제4조
○운영지원기구	·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	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22조~제24조

현 안	문 제 의 식	새법의 내용
○설치의무	· 설치 및 육성의 의무 규정화	제21조 제1항
○지도·감독체제	· 일원화	제24조~제29조
○각종기준	· 자료기준 강화 · 시설기준 강화 · 봉사기준 제정	제6조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과 부칙 제10조
○자료의 폐기등	· 도서관 자료 특유의 제작·폐기·이관 등의 제도화	제8조 시행령 제6조

4. 3대 당면과제

- 운영 재원의 문제
 - 예견되는 과도기적 어려움의 극복
 - 적정 규모의 국고보조 확보 노력
 - 진흥기금 조성 협력
 - 운영위원회의 활성화
 - 제정의 절대적인 영세성으로부터 탈피
- 인력의 합리화=전문직 유인체제 확립
 - 사서직급의 상향 조정 :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관계 직제
 - 정원 확충 : 봉사대상인구와 자료 및 이용자 비례제에 의한 적정수준
 - 전문직 구성비 강화 : 60% 이상의 수준
- 협력체제 내에서의 역할 강화
 - 지역대표관-지방대표관
 - 자체 능력의 신장
 - 업무전산화의 추진
 - 협력의지의 강화